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2007년 이후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나. 2012.08.17.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금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원인자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15조제1항 6호나목)

1)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별표 1)

1)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

* 하수도사용료 인상(20.66%) 가정용 220원=>252원(32원)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2013.10.10.(목)]

다. 관련법 조항 수정,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관련법령의 인용법규 조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01. ~ 11. 2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제15조”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2조”를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한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의”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를 “따른”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을 “설치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장으로 인하여”를 “고장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해수”를 “해수,”로, “제3조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정이”를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작물설치”를 “인공구조물 설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산정”을 “계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당해 신설되”를 “신설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 중 “시군내”를 “시군 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균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10	212
	11 ~ 20	229
	21 ~ 30	252
	31 ~ 40	279
	41 ~ 50	308
	51이상	335
업 무 용	1 ~ 20	347
	21 ~ 50	383
	51 ~ 100	420
	101 ~ 300	461
	301이상	471
영 업 용	1 ~ 30	555
	31 ~ 50	611
	51 ~ 100	675
	101이상	747
옥 탕 용	1 ~ 200	367
	201 ~ 300	350
	301 ~ 500	377
	501이상	414
전용공업용		705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u>하수도법</u>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하수도법</u>」----- ----- ----- ----- -----.</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하수도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15조</u> 및 같은 법 시행규칙 <u>제7조</u>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u>하수도법</u>」----- ---- <u>제15조</u>----- ----- 할 ----- ----- ----- -----.</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조례시행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 ----- ----- ---- <u>조례시행규칙</u>으로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p>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생략)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법 제27조제3항-----
4. (현행과 같음)

제4조(일시사용신고) -----

----- 조례시행규칙으로 -----
-----.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 인공구조물-----
조례시행규칙으로 -----
-----.

② -----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인공구조물 -----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1. -----

----- 인정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

----- 필요한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삭 제>

⑤ 제2항-----

-----.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별지 제1호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

②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

·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서-----
----- 따른 -----

----- 설치
되었는지 -----
-----.

③ -----

----- 검사하게 --
-----.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
--.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창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

음)

② 제1항에도 -----

-----.

③ -----

----- 추가 징수한다. -----

-----.

④ 제1항에 따라 -----

-----.

⑤ ----- 고장으로 -----

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생략)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생략)

3. (생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

-----.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수, -
----- 제3조제1항제2호-----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 산정이 -----

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잃어버렸 -----

----- 발생 시 -----
-----.

-----.

④ 제1항에 따라 -----

-----.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
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
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
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
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
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생략)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
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

⑤ -----

----- 인공구
조물 설치 -----
-----.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 법 제24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작-----
----- 계산-----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

-----.

1. ~ 5. (생략)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

1. ~ 5. (현행과 같음)

6.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다만,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

----- 해당 -----

-----.

③ -----
----- 위하여 -

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1.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해당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

신설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 법 제41조 제1항-----

----- 법 제45조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1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군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위탁) -----
시군 내-----

-----.

제22조(감면 등) ①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현행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과 같음)

② -----

----- 발
급하여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연락처	(033) 330 - 2363

관계법령

【 하수도법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지방자치법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